

제418회 국회  
(정기회)

#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31일(목)

장 소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국회 예산정책처장(지동하) 임명 동의의 건(의장 제의)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 국회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3001)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1785)
-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1694)
-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2730)
-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2758)
-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 국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4636)
- 국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4650)
- 국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3075)
- 국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145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0718)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0756)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0911)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223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3450)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111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203425)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2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0)
  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46)
  2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22)
  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71)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
  3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상정된 안건

1. 국회예산정책처장(지동하)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	6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	8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	10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	10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 .....	10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0) .....	10
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8) .....	10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6) .....	10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0) .....	10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 .....	10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 .....	10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 .....	10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 .....	10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 .....	10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 .....	10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	10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 .....	10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	10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	10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	10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24.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	11
2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0) .....	11
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46) .....	11
2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22) .....	11
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71) .....	11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 .....	11
3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찬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는데요. 2분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2분이요? 충분히 얘기.....

○**위원장 박찬대** 충분히?

○**배준영 위원** 예, 끝날 때까지.

○**위원장 박찬대** 예, 끝날 때까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간사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운영개선소위원회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찬대 위원장님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진행된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와 직접 연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오전 내내 수석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 갔는데요.

당일 오후 속개 이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안건별로 토론을 이어 갔고 국회 운영과 직접 연관된 의사일정 10항부터 45항까지는 단 1개도 빠짐없이 모두 쟁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의사를 합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박성준 소위원회께서는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료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운영위 소위 진행 과정에서 21대를 포함해 일방 날치기 처리한 예는 단 1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정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여당 소위 위원들의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서 현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강행으로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들러리 세우고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번에 강행 의결된 안건 내용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같은 민주당 이소영 위원께서도 예산자동부의제도 폐지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차년도 적용을 전제로 조금 심사숙고하자는 의견도 제셨고,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자당 위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공개하자는 저희 제안을 소위원장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운영위 간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 강행 처리되는 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박찬대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중인 채택에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일 대통령실 국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에 올려 가지고 의결을 해서, 이것도 날치기 처리해서 중인을 이렇게 부르면 저희는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중인의 인권이 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런 과행적인 운영에 대해서…… 국회운영위 아닙니까? 국회운영위는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인 채택에 대해서는 철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간사님 발언 있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지난 운영위 소위가 열렸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돼서, 논쟁적인 법안들도 있었지요. 통과된 법률이 6건, 규칙개정안 1건 이렇게 표결에 부쳐서 통과가 됐는데요.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특별검사후보 추천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추천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서 여당의 특검 추천 위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안이지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봤듯이 불출석, 내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하는데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국회에서 법률적 보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도 있지만 청문회에서도 출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았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예산안 심의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11월 30일까지 예산에 대한 심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동부의가 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삼권분립 차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완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면 11월 30일 다음 날부터는 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국회의 입법을, 예산심의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논리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국회의원 기소·구속됐을 경우에 세비 지급하지 않는 방안, 이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해서 법안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국회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들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이것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강민국 위원 지난 운영소위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에 대해 저는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박성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2012년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참 말 그대로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골격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박찬대 위원장님이랑 박성준 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예산안 확정하기 위해서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엄청난 물리적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의 지연 등 다반사처럼 발생한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동물국회였습니다.

당시 아시다시피 여야는 날치기, 몸싸움 등 다수당 횡포를 배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했고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데 이것을 지금 거대 야당 민주당이 그냥 의석수로 여야 합의를 12년 만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선진화법의 근간인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거대 야당 손으로 사장되어서 국민들께 지탄받는 국회로 회귀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만약 국회법이 최종 수정이 되면 정말 정부 예산편성권 등 국회가, 삼권

분립이 그냥 봉괴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상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예산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내가 사실 모르겠는데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만큼은 정말 다시 동물국회로 회귀하는…… 그러면 아예 국회선진화법을 폐지를 하든지요. 그러면 고소 고발하고 진짜 물리적으로 행사하든지, 저는 차라리 그게 더 좋다 싶어요. 언제 또 앓아 가지고 마이크 잡고 고성 지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만큼은 오늘 좀 보류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국회예산정책처장(지동하)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장(지동하)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에 대한 이력과 병역 신고사항 등 부속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모경중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님들도 다 하셨지요?

(10시2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27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지동하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7표 중 가 25표, 부 2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장(지동하)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명예정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하 국회예산처장 임명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임명예정자 지동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회예산처장으로 임명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재정전문기관이라는 우리 처에 부여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재정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예산정책처의 모든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표소 철거 및 국가인권위원회 중인 등의 착석을 위한 정리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지금 하시겠습니까? 안건 설명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성준 위원** 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그냥 손 든 김에 먼저 하지요.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씩만 하시지요, 오전에도 1분씩만 했으니까.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배준영 간사입니다.

○**박성준 위원** 1분이요, 1분.

○**강민국 위원** 그것을 마음대로 정해?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박찬대** 2분 주세요. 2분 하세요.

○**배준영 위원**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에 증인을 삼십여 명을 신청을 했는데 여야 간 협의라고는 하지만 단 한 명도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전부 무산됐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집중 질문한 촛불…… 촛불연대?

○**강승규 위원** 촛불행동.

○**배준영 위원** 촛불행동도 있었는데, 유감입니다.

더 놀랍고 정말 경악스러운 일은 내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데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이렇게…… 지금이 몇 시입니까? 밤 10시 50분에, 내일 오전에 시작되고 오후 2시에는 일반증인·참고인이 나올 텐데 이렇게 벼락 날치기로 하는 것이 정말 국회에 전례가 있는지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찾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가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도한 국감과 의사진행은 정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요.

여기 야당 위원님들은 뜻하는 바가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국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철회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이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도 그렇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한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직접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공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일선에서 취재했던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증인이 나오겠고 또 저희들이 증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증인으로, 봉지욱 기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던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와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있던 심인보 기자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7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출석은 7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찬대** 그것은 출석과 관련된 본인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강민국 위원** 아니, 증인 신청을 국정……

○**이소영 위원** 그것은 증인의 이의……

○**박성준 위원**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요.

○**위원장 박찬대** 증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이소영 위원**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증인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무방합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뭐 법이 그렇다고 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 겁니까?

○**강민국 위원** 이 시간에 증인을 신청한다는 것은……

○**배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맞는다.

○**위원장 박찬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규 위원** 왜 두 번씩이나 들라고 그래요, 그것을?
- 정성국 위원** 왜 또 들라 그래요?
- 위원장 박찬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제대로 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 강승규 위원** 저는 가치를 못 느껴서 못 들겠어요.
- 위원장 박찬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석위원 24인 중 찬성 1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0)
  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8)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6)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0)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24.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 2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0)
  - 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46)
  - 2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22)
  - 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71)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
  - 3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시56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합의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찬대 먼저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 전에 우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 보세요.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합시다.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소위원장님……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들어야지요.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어떻게, 배준영 간사님 하시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강민국 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배준영 간사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분명하게 민주당 주도의 일방·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지난 운영개선소위에서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안건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진행할 거라면 우리 국민의 힘 위원들이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소위에서 다뤄진 45개 안건의 실질적인 논의 시간은 오전에는 행정실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후 2시 31분에 속개해서 토론을 진행한 후 논의 결과를 위해 정회한 16시 19분까지 고작 1시간 48분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건 1개당 논의 시간이 3분이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늘 날치기를 시도하는 안건들은 국회선진화법 과정에서 도입된 예산안 자동

상정제도 폐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제출 의무화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 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소위 강행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이더니……

조금만 더 주세요.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장님의 그리고 오늘의 이 의사진행은 우리 현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위원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그러니까 9·10·11항은 좀 숙성하고 보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선진화법 골격이 바로 예산안 자동부의입니다. 이것 정말 여야 합의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지요.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예산안을 확정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정에 물리적 충돌, 심의 지연 등 다반사로 일어나서 그야 말로 해며 사건부터 폭력까지, 동물국회였습니다. 그런 날치기와 몸싸움 등 이런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건데 이것을 다시 사장시켜서 동물국회로 가자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또 사실 본 위원이 아침에 분명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9항, 10항, 11항은 좀 보류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표결하고 강행 처리한다고 하시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운영위가 막장운영위, 동물운영위 되는 데 대해서 모든 책임을 위원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분명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지금 의사진행발언 겸 토론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박성준 소위원회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고……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토론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강명구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민주당이 지금 각종 탄핵과 청문회로 모자라서 이렇게 아예 여당의 입을 막겠다고, 정부를 무릎을 끓리겠다고 막장으로 가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난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악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우리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신, 우리 의석수가 적다고 이런 악법들도 법이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소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입법 독재와 현정질서 파괴에 앞장서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찬대 이상이십니까?

○강명구 위원 예. 그리고 전체회의까지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박찬대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체제 마비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훌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반드시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번에는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여러분들은 통과시키려고 하자는 거고 우리는 반대하니까 우리만 하는 거지 그쪽까지 또 할 것 뭐 있어?

○이소영 위원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요, 번갈아 가면서.

○전용기 위원 저도 신청했어요. 저희도 소위 위원이여 가지고 신청했어요.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소영 위원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인 경우에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한다는 규칙개정안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여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면 특검을 왜 합니까? 겸찰이 하지요. 특검을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수사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자가 수사대상인 경우에 엄정한 수사가 안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할 수 있다 이런 의심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공수처 만들자고 해 가지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여당 쪽 추천 인사를 특검을 시킨다?

○임이자 위원 그 논리로 해 가지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소영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 **임이자 위원**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 놓고 뭔 얘기 하는 거예요!

○ **강명구 위원** 말이 되는 것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고 그래야 되지 의혹만 가지고 무슨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장내 소란)

○ **이소영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 **모경종 위원** 위원님, 발언할 때 들으세요.

○ **전용기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소영 위원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 **임이자 위원** 왜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그 난리를 쳐 놓고 이제 그것도 못 믿겠다?

○ **이소영 위원** 위원님.

○ **임이자 위원** 아니, 특검 하는 테 돈 안 들어요? 국민 세금 안 들어?

○ **이소영 위원**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 **서미화 위원** 임이자 위원님! 국민의힘도 듣기 힘든데 다 참고 들었어요. 위원님도 참고 들으세요!

○ **이소영 위원** 권력자가 수사대상이었던 최근 특검이 세 개가 있습니다, 내곡동 특검, 드루킹 특검, 국정농단 특검. 최근에 권력자가 수사대상이었던 이 세 개의 특검이 모두 대통령 또는 여당 핵심 인사가 수사대상이었기 때문에 특검 추천할 때 여당은 배제하고 다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 **임이자 위원** 공수처에서 하라고, 공수처에서!

○ **모경종 위원** 들어 보세요.

○ **임이자 위원** 아니, 검찰 못 믿는다고 공수처 만들어 놓고 또 특검 하면 그 돈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모경종 위원** 발언을 좀 들어 주시고 하세요!

○ **강유정 위원** 임이자 위원님, 조금만 들어 주세요.

○ **임이자 위원** 들을 수가 없어.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거야.

○ **이소영 위원** 그리고 걸핏하면 ‘위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위헌적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헌법 규정에 뭐가 저촉되는지를 정확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특검후보자 추천에서 여당 배제하는 게 위헌이다? 몇 년 전에, 2017년에 최순실 씨가 바로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고요. 그 현재 판결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17현바196, 헌법재판관 전원……

1분만 더 주세요.

○ **위원장 박찬대** 예.

○ **이소영 위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결정 요지, ‘특검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그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

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당시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

뭐를 위헌이라고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인지를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요.

○**전용기 위원** 저도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소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토론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시면 안 될까요?

○**천하람 위원** 예,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때 하셔도 괜찮겠지요?

○**천하람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잠깐만, 임이자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소위원장 보고를 들은 다음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다수의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막 휘두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검찰 못 믿겠다고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또 하나는 북한에 빼라 보내는 것,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니 그건 결국은 위헌 판결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힘으로 공수처에서 하도록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특검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소영 위원**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임이자 위원** 내 말 끝까지 들어 봐요.

○**이소영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방해하시더니 저는 방해하면 안 돼요?

○**임이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해하세요. 하세요, 얘기하세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보시라고요. 안 되니까 특검 하자는 거잖아요.

○**임이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다수당이 될 때가…… 지금 다수당이니까요. 국민의힘도 다수당 될 때 있을 거예요.

○**정진욱 위원** 그때 하세요, 그때.

○**임이자 위원** 그때 하지 말라고 해도 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계속 대화와 타협 속에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지요. 그러면 거부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정진욱 위원 모든 법은 여야 합의가 되어야 받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럼요!

○정진욱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임이자 위원 그래서 저는 또 대통령 거부권 마일리지 쌓으려고 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뭐가 더 민생에 전진이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딱하고 우리도 딱합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여기에 앉아 있을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결사반대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9·10·11항은 좀 빼고 제안설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일단 보고 들으시고요.

○배준영 위원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거면 우리가 뭐 하러 그걸 합니까? 소위 때도 마음대로 하고 전체회의 때도 마음대로 하시고. 아니, 제가 국회사무처에 물어보니까요 운영위 소위에서 역대로 그렇게 거수로 날치기 처리한 게 헌정사에 없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를 쓰셨어요. 자랑스러우시지요?

○윤종군 위원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그래요.

○이소영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더 헌정사의 역사를 쓰고 계세요.

○배준영 위원 자랑스러우시면 계속해 보세요.

○윤종군 위원 거부권 역사 새로 쓰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보고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번 시정연설은 오십니까? 이번 시정연설은 오세요? 오시냐고요, 국회 개원할 때 안 오시더니. 그것도 헌정사에 처음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개원할 때 안 온 것?

○서미화 위원 아니, 부끄러운 줄 알고 말 좀 하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구먼! 뒷을 알고 말 좀 하세요, 간사님. 윤석열 대통령 진짜 이 나라를 이 꼴 만들어 놓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말해야지!

○배준영 위원 아니, 여기는 국회잖아요. 국회에서는 국회의 룰을 지키세요.

○정진욱 위원 윤석열, 김건희하고 날마다 역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역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서미화 위원 진짜 뉴스도 안 봅니까? 날마다 새 뉴스, 새로운 역사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진짜……

○정진욱 위원 세상에 이런 대통령 어디 있어요? 이런 영부인 어디 있어요?

○임이자 위원 내일 만나서 얘기하고……

○윤종군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열른 나가시고.

○배준영 위원 날치기 처리하지 말자고 민주당에서 70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정진욱 위원 나가시려면 열른 나가세요.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스스로 다 저지르셨지요? 나중에 책임지세요.

○ **윤종군 위원** 마무리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 **소위원장 박성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황운하 의원, 임광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조승래 의원, 민형배 의원, 신정훈 의원,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이 질병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증인 등의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허위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받은 서류의 파기·은닉, 보고 또는 서류제출 방해,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의원, 최수진 의원, 서천호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및 지방의회의원 수당 등 지급 제한과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무죄 확정판결 시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납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기록물의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호공무원 강등 시 계급정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진정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박성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추천 뜻을 2개의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되 비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까 강민국 위원님 하셨으니까 천하람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정식 명칭은 좀입니다마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한 경우에,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 여당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 중에 의석수가 같은 비교섭단체의 우선권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교섭단체의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높은 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률 여러 곳에서 연장자 우선 규정 같은 것들을 두고 있는데 저는 시대착오적인 장유유서 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또 특검 추천에 있어서까지 국회 내에서의 비교섭단체 우선권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특히 저희 개혁신당같이 새로운 정당, 특히 구성원들이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그런 정당이 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주요 구성원분들도 새로운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 짧은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모순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부당한 선례를 다시 한번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물론 국회 안에서 선수, 우리가 많이 기준으로 씁니다마는 어떤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을 줌에 있어 가지고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 저는 그게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나 연장자는 너무 여의도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직전 총선에서 정당 득표 기준으로 어떤 정당이 국민에게 얼마나 더 많은 선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이 어렵다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차라리 해당 비교섭단체 사이에 협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 뭔가 우리 운영위가 됐든 어떤 더 큰 대의기구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물론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선수나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장유유서 기준 아닌가 해서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이 비교섭단체 우선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22대가 올 때까지 우리 국회 현정사가 정말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루어 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본 이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소위 단 하루 만에 이것을 사장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정말 이것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9·10·11항만큼은 좀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을 해서 여야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좀 더 숙성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때 되면 저도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깊게 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전용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저는 예산권만큼은 우리 국회가 가져야 될 그런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삼권분립하에 예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 왔었던 것이고 운영개선소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예산권조차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맡겨 둔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재부의 논리에 놀아나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가 아니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권을 국회가 온전히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정부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감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자료제출을 허위로 하고 심지어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뉴스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 조치를 해야 되고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인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도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온라인 출석과 관련돼서 저도 사실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번이 온라인 출석을 해 왔습니다. 법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 미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실제로 채 해병 특검 때, 특검이 아니지요. 채 해병과 관련된 청문회 때도 김계환 사령관이 본인이 국회에 오면 북한이 도발하고 안보의 이유로 나는 출석할 수 없다 이런 해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를 대면서 이렇게 온라인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법에 없었던 내용을 들이밀면서까지 우리 국회는 양해를 해 줬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라고 봐서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 특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공수처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번에도 채 해병 수사검사는 임명도 안 하려고 시간을 끌다 끌다 끌다 결국에는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거부권 말씀하시는데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하실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명을 안 한다면 또 다른 법률적 문제에 휩싸이실 것이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저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같이 이 법률안을 통과시킨 소위원으로서도 강력하게 다시 한번 통과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더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뭐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생각을 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합의를 이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9·10·11항을 포함해서 의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막장 운영위, 고성 운영위 모든 책임을 지실 거예요?

○위원장 박찬대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먼저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박찬대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강민국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정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 박찬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강민국 위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국회법……

○ 강민국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위원장 박찬대 의결로……

○ 강민국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결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 위원장 박찬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강민국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다음 전체회의에 하든지 숙성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고요……

○ 강민국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 윤건영 위원 진행하시지요, 그냥.

○ 위원장 박찬대 자리에 앉아 주세요.

○ 정진욱 위원 강민국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으면 자리로 가십시오.

○ 강민국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봅시다.

(일부 위원 퇴장)

○ 위원장 박찬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천하람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개정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먼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박찬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자료 납본 도입 관련 국회도서관법 개정으로 국회도서관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자원 수집·보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님들께는 입법 및 의정활동에 보다 다양한 자료를, 전 국민에게는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충실하게,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중에도 대통령경호처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법률 개정의 의미를 되새겨 경호업무 수행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호업무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산회)

###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대통령비서실 (11. 1. 국회)	제20대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대통령실 공천 개입 관련 등

참고인(1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봉지욱	기자	대통령비서실 (11. 1. 국회)	대통령실 공천 개입 관련

#### ○출석 위원(27인)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유정 고민정 권영진 김민석 김성희 김정재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박찬대 배준영 서미화 신장식 양문석 윤건영 윤종균 이소영  
임이자 전용기 정성국 정진욱 주진우 천하람 추미애

#### ○첨가 위원(1인)

추경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주성훈

#### ○출석 국회예산정책처장임명예정자

지동하

#### ○국회측 참석자

국회도서관  
관장 이명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4)

10월 18일 회부됨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3.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7)

이상 2건 10월 24일 회부됨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2024. 10. 28. 박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9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7)

이상 4건 10월 2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9)

10월 30일 회부됨

**○요청서 회부****국회예산정책처장(지동하) 임명동의 요청**

(2024. 10. 30. 의장 제의)

10월 30일 회부됨